

「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15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상품권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상품권의 재발급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3조)
-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5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6조~제2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 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4. 1. 9. ~ 1. 15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활성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가맹점 등록현황 공개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자금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, 월 구매 한도를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구미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.